

지난 10월 23일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는 “특수건강진단 제도 개선안(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다. 게재되는 내용은 특수건강진단 제도 개선 위원회가 '97. 2. 26 발족아래 9. 25 까지 12회에 걸친 검토회의를 거쳐 확정한 개선안이다.

특수건강진단 제도 개선안(초안)

○ 이번에 마련한 특수건강진단제도 개선안은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사후조치에 충실한 건강진단제도의 구현으로 근로자가 건강진단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강진단 항목은 현행 엄격하게 구분된 1차항목과 2차항목을 통합하여 시행하므로써 선별검사의 기능을 제고하며, 필수항목과 필요시 선택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되 검진의사가 선택(추가·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위험근로자 집단에는 보다 충실향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함.
- 건강진단실시주기는 현행 납·특정화학물질·유기용제 등 화학적 인자(107종)에 대해 6월에 1회이상, 소음·분진 등 물리적 인자(11종)에 대해 1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획일성·형식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건강진단 주기를 설정하고, 필요시 그 주기를 단축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며
- 건강진단 대상자 선정은 일정기간마다 현행처럼 유해인자 부서 종사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되, 근로자의 건강상태나 작업환경 여건에 관계없이 현행의 획일적인 대상자 선정에서 오는 낭비 및 형식성을 피하기 위하여 대상자 선정을 따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 건강진단 절차 및 진단방법은 모든 사항을

법규로 규정해온 현행 방식을 탈피하여 기본적인 내용은 법규화하고, 구체적인 진단항목·판단기준 등은 산업보건연구원에서 지침형태로 제시하여 산업발달과 학문적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 사후관리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대상을 질병유소견자 뿐만 아니라 요관찰자까지 확대하고 건강진단결과를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에 반영하도록 하며, 건강진단에서 발견된 직업병 의심자에 대하여 산재요양 및 보상을 위한 정밀진단 실시 의뢰 안내로 신속하게 직업병 여부 판단을 하도록 하며
- 재직 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중 특수건강진단을 더욱 강화하고 일반건강진단은 WHO 선별검사 기준에 맞도록 하며 유해부서의 신규채용자와 작업전환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강화하여 적성 배치 및 건강보호를 도모함
- 아울러 직업관련성을 의심하는 증상 호소시에도 일정요건 충족시 건강진단을 수시 실시할 수 있도록 「수시건강진단」 실시요건을 확대하고
- 발암물질 취급자에 대하여는 일정요건 충족시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 이직후에도 평생동안 건강관리가 되도록 함
- 또한 근로자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검진의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내실있는 수행과 특수건강진단수

가의 대폭적인 현실화를 추진하며

- 건강진단주기·대상자선정·건강진단항목·검진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적인 연구를 추진할 계획임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특수건강진단제도개선 최종안을 확정하고 세부연구 작업이 진행되는 대로 노동부에서는 관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 한편 특수건강제도 개선위원회에서는 '97. 10월 중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 현행제도와 개선안 비교표

분야	현 행 제 도	개 선 안	비 고
건강진단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시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건강관리수첩교부자 건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전건강진단 ● 정기건강진단(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대상을 기존검진항목이외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함(예, 근골격계질환 등) - 직업관련성을 의심하는 증상을 호소하는 등 일정요건충족시 당해 근로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실시요건 확대 ● 건강관리수첩교부자 건강진단의 내실화 일정요건 충족시(3년간 석면취급 등) 발암물질 취급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 이직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진단등 관리가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 강구 	〈건강진단대상항목과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연구추진〉
건강진단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시건강진단 : 작업배치전 ●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은 2년에 1회 기타근로자는 1년에 1회 ● 특수건강진단: 6개월 내지 1년에 1회 (작업환경측정횟수 조정에 따라 건강진단주기 조정 가능) ● 건강관리수첩교부자 건강진단 : 1년에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전건강진단 : 유해부서신규채용시, 작업부서전환시 ● 정기건강진단 : 대상질병 및 유해인자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필요시 주기를 단축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 ● 건강관리수첩교부자 건강진단 : 1년에 1회 	〈주기를 단축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세부 연구 추진〉
건강진단 대상자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정한 유해업무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기간마다 현행처럼 유해인자 부서종사가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되 ● 보건관리자나 산업보건의(사업장내 의사)의 건의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합의시 대상자 선정을 따로 할 수 있는 조건 명시 	〈대상자 별도 선정 조건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세부 연구 추진〉
건강진단 항목 및 진단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항목과 2차 항목을 별도구분 ● 진단절차 및 진단방법을 모두 법적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항목과 2차 항목을 원칙적으로 통합하여 시행 ○ 필수항목과 필요시 선택항목(추가, 삭제)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검진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진단절차 및 진단방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노동부고시로 정하고 ○ 구체적인 내용(진단항목, 판단기준, 진단주기 등)은 노동부 고시가 아닌 지침(안내서)의 형태로 함. 	〈건강진단대상, 항목과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 연구 추진〉

분야	현행 제도	개선안	비고													
건강관리 구분 및 사후조치	<p>〈건강관리구분〉</p> <p>A : 건강자 B : 경미한 소견이 있는자 C : 건강관리상 계속 관찰이 필요한 자 D1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이 있는 자(유소견자) D2 : 일반 질병의 소견이 있는자(유소견자) R : 질환 의심자</p> <p>〈사후조치〉</p> <p>A : 사후관리 필요없음 B : 사후관리 필요없음 C : 의사의 소견에 따른 의학적 조치 D1 : 의사의 소견에 따른 요양신청, 작업 전환, 취업장소의 변경 및 근무중 치료, 기타 의학적 조치 D2 : 의사의 소견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휴직, 근무중 치료, 기타 의학적 조치 R :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제2차 건강진단 실시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실시)</p>	<p>〈건강구분 - 업무수행성평가 - 사후관리〉의 세가지 구성요소(triple code)를 갖는〈산업의학적평가〉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구분 <p>건강구분은 업무관련성 및 건강수준에 대한 구분임.</p> <p>A : 건강자 C : 건강관리상 계속 관찰이 필요한자(요관찰자) D1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이 있는자(직업병소견자) D2 : 일반 질병의 소견이 있는자(일반질병소유자)</p> <p>○ 업무수행성평가</p> <p>현재의 건강상태를 구분한 후 당해 작업환경과의 관련하에서 업무수행 지속여부를 평가</p> <p>가 : 건강관리상 아무런 조치없이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 :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개인보호구착용,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 하에서 현 작업이 가능한 경우 다 : 한시적으로 협조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 상의 문제를 해결후 작업복귀가능) 라 : 건강장애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애 발생으로 현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p> <p>○ 사후관리</p> <p>※ '개인 건강관리조치', '사업장 작업환경개선조치', '직업병확진의뢰 안내조치' 내용의 코드를 각각 선택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건강관리조치 <table border="0"> <tr> <td>10 필요없음</td> <td>11 건강증진지도</td> <td>12 ()개월후 추적검사</td> </tr> <tr> <td>13 보호구 착용</td> <td>14 근로시간 단축</td> <td>15 작업전환</td> </tr> <tr> <td>16 근무중 치료</td> <td>17 휴직 치료</td> <td>18 기타(내용 기재)</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작업환경개선조치 <table border="0"> <tr> <td>20 필요없음</td> <td>21 필요없음(내용기재)</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병확진의뢰 안내조치 <table border="0"> <tr> <td>30 필요없음</td> <td>31 산재보상 및 요양을 위한 정밀진단실의뢰 안내</td> </tr> </table>	10 필요없음	11 건강증진지도	12 ()개월후 추적검사	13 보호구 착용	14 근로시간 단축	15 작업전환	16 근무중 치료	17 휴직 치료	18 기타(내용 기재)	20 필요없음	21 필요없음(내용기재)	30 필요없음	31 산재보상 및 요양을 위한 정밀진단실의뢰 안내	<p>※ C를 C1과 C2로 구분하자는 의견도 있었음.</p> <p>*근로자건강진단을 통해 발견된 직업병의 심자를 받도록 의뢰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상 질병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함.</p>
10 필요없음	11 건강증진지도	12 ()개월후 추적검사														
13 보호구 착용	14 근로시간 단축	15 작업전환														
16 근무중 치료	17 휴직 치료	18 기타(내용 기재)														
20 필요없음	21 필요없음(내용기재)															
30 필요없음	31 산재보상 및 요양을 위한 정밀진단실의뢰 안내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건강진단수가는 의료보험법수가기준 ● 건강진단결과를 5년간(발암물질 취급자는 30년간)사업주가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건강진단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사후관리비용 · 예비조사비용 등을 포함하여 특수건강진단수가의 현실화 방안 추진 필요 ○ 검진의사, 산업보건의(전임 또는 위촉)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실있는 교육 실시 ○ 의사인 보건관리자가 있는 사업장을 근로자 건강진단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요건을 개정하는 등 자율적 보건관리 유도 ○ 배치전 건강진단, 질병이환시점의 최초건강진단이후의 결과 등은 사업주가 현재보다 장기간 보존토록 하는 등 연구검토 필요 														